영남대학교 국내외 대학(원)에서의 교과목 이수와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1997. 1.28.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1999. 2.18.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2. 1.29.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4. 2.24.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07. 2.13.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12. 7. 4.

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16. 2.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5조의 2에 의거한 우리 대학교 대학원 또는 국내·외 타 대학 (원)(이하 "교류대학"이라 한다)에서의 교과목이수와 이수학점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4.>

- 제2조(교류대학의 범위) ① 이 규정에 의해 이수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류대학의 범위는 우리 대학교와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원)에 한한다. 단, 우리 대학교와 학 생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원)중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허가 한 대학(원)은 포함한다.<개정 2012.7.4>
 - ② 전항의 대학(원)에는 총장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 제3조(구분)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우리 대학교 대학원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원)(이하 "국내대학"이라 한다)에서의 교과목이수<개정 2012.7.4.>
 - 2.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원)(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에서의 교과목이수
 - 3. 외국대학에서의 단기연수(이하 "단기연수"라 한다)에 의한 교과목이수
 - 4. YU Global Study Program(YU GSP) 파견 프로그램에 따른 해외어학실습수업에 의한 교과목이수<신설 2007.2.13.><개정 2012.7.4.>
- 제4조(신청자격) 교류대학에서의 교과목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공통사항
 - 가. 우리 대학교에서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07.2.13.. 2012.7.4>
 - 나.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다. 해당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및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라. 취득성적이 총 평점평균 B(3.0) 이상인 자<신설 2007.2.13.>
 - 2. 국내대학에서의 학점이수<신설 2016.2.16.>
 - 가. 등록횟수가 3회 이상 7회 이하인 재학생(단, 편입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자)
 - 나. 학점교류 당해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2개 학기 동안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3. 외국대학에서의 학점이수<개정 2016.2.16.>

- 가. 해당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 나.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5조(신청 및 선발절차) ① 국내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과)장 및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2.13·2011.4.13>
 - ② 외국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과) 장 및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대외협력처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 2.24. 2007.2.13·2011.4.13>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 수학능력 등에 관한 심사를 거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교류학생을 선발한다.
 - ④ 전항의 심사를 위해 필요시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학부(과)별 단기연수) 학생선발, 인원, 기간, 비용, 출국수속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학부(과)에서 주관하며, 외국대학에서의 연수실시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대학(부)장을 경유하여 대외협력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 2.24·2007.2.13·2011.4.13>
- 제7조(수강신청) ①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류대학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교류대학이 국내대학인 경우에는 사전에 학술교류대학 수학계획서를 소속 학부(과)장 및 학(부)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한 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 2.24·2007.2.13·2011.4.13>
 - ② 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교무처에 수강과목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4.13.,2012.7.4>
 - ③ 제1항의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우리 대학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3 (전 과목 이수의 포기)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4.>
- 제8조(수강기간) ① 교류대학에서의 수강기간은 재학 중 통산 4개 학기(국내대학은 2개 학기, 외국대학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동·하계 방학기간중의 계절학기와 외국대학 에서의 단기연수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99.2.18.·2002.1.29.,2016.2.16.>
 - ② 학위취득 학기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단, 학위 연계과정을 이수중 인 자 또는 우리 대학교의 성적평가 이전에 학점인정을 완료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 다.<개정:2002.1.29.,2012.7.4>
 - ③ 단기연수 기간은 4주 이상으로서, 시간으로는 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7.4.>
 - ④ 수강기간중 우리 대학교 총장의 허가없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개정 2007.2.13.,2012.7.4>
 - ⑤ 대외협력처는 외국대학에 교류학생으로 선발 또는 취소 된 자를 지체 없이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 2.24·2007.2.13.·2011.4.13.,2012.7.4>
 - ⑥ 교류대학에 파견되어 교과목이수 중인 학생은 파견기간 중 우리 대학교 정규 및 계절학기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단, 국내 학점교류 학생은 예외로 한다.<신설

2007.2.13.><개정 2012.7.4.>

- ① YU Global Study Program(YU GSP) 파견 프로그램에 의한 해외어학실습수업은 학기 중의 수업으로, 기간은 각 실습 영역에 따라 6주 120시간 이상부터 15주 300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7.2.13.><개정 2012.7.4.>
- 제9조(학점인정) ① 교류대학의 학기가 종료되었거나 수강기간이 만료되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한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신청서를 국내대학은 교무처에, 외국대학은 대외협력처의 검토를 거쳐 소속 학부 (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24·2011.4.13.,2012.7.4>
 - ② 해당 학부(과)장은 전항에 의해 제출된 학점인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심사한 후 학점인 정조서를 작성하고 소속 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24·2011.4.13.,2012.7.4>
 - ③ 삭제<2012.7.4>
 - ④ 교무처에서는 전항에 의해 제출된 학점인정조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교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 대학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성적 실 점수 인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교류대학은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실 점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4. 2.24·2011.4.13.,2012.7.4>
 - ⑤ 전항의 국내대학에서의 학점인정은 당해 학기에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1개 학기에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내대학의 계절학기 수업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학칙 제35조의2 제2항에서 정한교류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총 학점수의 범위내로 한다.<개정:99. 2. 18·2007.2.13.,2012.7.4.,2016.2.16.>
 - ⑥ 국내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 및 이수학점은 교류대학의 교과목 및 이수학점과 동일하게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 및 이수학점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명에 "교류"를 표기하여 구분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2.7.4.,2016.2.16.>
 - ①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은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으로 그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과목으로 대체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2.13.,2012.7.4.>
 - 8 인정과목의 학점 및 이수구분은 학생 소속 학부(과)에서 결정하되, 대체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체받을 교과목의 학점이 우리 대학교의 대체과목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대학 학점 체계가 우리 대학교와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학점 변환 기준에따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2.7.4. 개정 2016.2.16.>

유럽통합학점체계(ECTS)	우리 대학교
1	1
2	1
3	2
4	3
5	3
6	4
7	4
8	5
9	6
10	6
11	7
12	8

- ※ 13 ECTS 이상은 유럽통합학점체계(ECTS) × 2/3 기준을 적용함
- ⑨ 우리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동일 교과목의 학점 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동일 교과목 여부의 판단은 학부(과)장이 한다.<신설 2012.7.4.>
- 제9조의2(학점인정교과목) 해외어학실습수업으로 인한 학점인정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인정한다.<신설 2007.2.13>
 - 1. 해외어학실습(1) : 6주 이상, 120시간이상 이수
 - 2. 해외어학실습(2) : 9주 이상, 180시간이상 이수
 - 3. 해외어학실습(3): 12주 이상, 240시간이상 이수
 - 4. 해외어학실습(4) : 15주 이상, 300시간이상 이수
- 제10조(교류학생의 의무) ① 교류학생은 제8조의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의 전액 등록금을 우리 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교류대학에서의 학점취득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단기연수 수학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2.13.,2012.7.4>
 - ② 제8조의 수강기간중에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서 승인한 교류대학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7.4.>
- 제11조(학생지도) 교류학생의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7.4.>
- 제12조(협약과의 관계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등 관련 규정과 교류대학 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교류대학과 체결한 협약과 상치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 칙(1997.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13)

제1조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13)

제1조(직제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외국대학에 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